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64
----------	------

제출일자 : 2022.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답례품의 종류는 달성군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과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및 군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 공정을 기하기 위한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 공급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라. 기부금 기탁서 접수, 기부자 본인 여부 확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등,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재원을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재원을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정함.(안 제8조)

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정함.(안 제9조)

아. 기금 관리·운용 시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필요한 비용을 시행령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기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함.(안 제10조)

자. 고향사랑 기금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함.(안 제11조)

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위원구성,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21조)

카.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제23조)

타.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2023.1.1.)과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규정함.(부칙 안 제1조~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붙임)

나. 예산조치 : '23년도 본예산에 답례품 제공비용 등 반영 예정

다. 기타

(1) 입법예고(2022. 9. 15.~ 10. 5.)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달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이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군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답례품 선정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의 관할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기업이 군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및 군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을 포함)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수가 인증한 품목 및 군 지역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축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관할구역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물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등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의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제2호 사항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마련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달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

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임명 또는 위촉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등 기부금품 업무를 담당하거나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 사업 및 기금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위원으로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전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호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의 이행 및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선정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 계속 추진
- 주요내용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 규정 및 제도 실행 근거 마련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성공적인 제도 정착 도모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근 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시행 : '23. 1. 1.
- 기부주체 : 개인 (법인 불가)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부혜택 :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답례품 제공(기부액 30%이내)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답례품 구입비, 배송비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소요되는 주요 비용이 기부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며,
- 기존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와 기부 성격에 차이가 있어 기부 규모 추정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